

부부 공동명의 안내

제일풍경채 검단III 아파트는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간 분양권전매가 불가합니다. 다만, 「주택법시행령 제73조 4항」에 의거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동의하에 부부간 공동명의가 가능합니다.

부부공동명의 변경 일정 및 장소 안내

일정	26년 09월 17일(목)부터 이후 매주 수요일 ex) 9월 23일(수), 30일(수), 10월 7일(수).....
시간	10:00 ~ 16: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장소	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마루로71(불로동, 검단호수공원역풍경채어바니티) 입주지원센터 / 문의) 032-564-7068

※ 통화량이 많은 경우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부부공동명의 변경 절차 및 서류

Step 01	증여 계약서 작성 및 검인 (검단구청 방문)	- 인천 검단구청 부동산관리팀 방문하여 증여계약서 작성 지자체 검인 必 - 검단구청에 구비 되어있는 증여계약서 작성 후 검인 必 - 구비서류 : 아파트공급계약서원본, 신분증(계약자,배우자),인감도장(계약자,배우자) / 계약자,배우자 중 1인 방문가능 - 인천 검단구청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주소 : 인천 검단구 독정로 125번길 12 / ☎ 032-726-7292)
Step 02	중도금대출 채무승계 (중도금 대출 지점)	- 중도금대출 신청세대에 한하여 중도금대출 채무승계 절차 진행(해당 은행 지점 방문) 후 채무승계 동의서 수령 - 중도금 대출 신청 후 대출전액상환 세대는 대출완제영수증 또는 상환영수증 지참 - 중도금 대출 채무승계 관련하여 절차 및 구비서류는 세대의 해당 은행(기대출 영업점)으로 문의 (해당 지점은 동별로 상이. 관련 내용 홈페이지 팝업 참고(https://jeil-gd3.co.kr))
Step 03	LH 전매 동의서 신청 (입주지원센터)	- 지정된 날짜 및 시간에 사무실 방문 - 입주 지원센터: 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마루로71(불로동, 검단호수공원역풍경채어바니티) - 구비서류 - 공 통 : 아파트공급계약서, 증여계약서(검인 必), 채무승계동의서(중도금대출은행) 또는 대출(완제)상환영수증 - 계약자(증여): 가족관계증명서2부, 매도용 인감증명서2부(본인발급용), 주민등록등본2부, 신분증, 인감도장 - 배우자(수증): 일반 인감증명서2부(본인발급용), 주민등록등본 2부(분리세대의 경우만), 신분증, 인감도장 ※모든 구비서류는 공동명의 신청 접수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본인 발급분만 가능 (세대주,세대원 모두 표기,주민번호 뒷자리포함) ※ 계약자, 배우자 본인 방문 원칙 ※ 전자민원창구용 인감증명서 사용불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양권 동의 신청은 사업주체가 일괄 대리 접수하며 전매동의 완료까지 약 4주 소요예정.
Step 04	분양권 권리의무승계 (입주지원센터)	- 입주지원센터: 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마루로71(불로동, 검단호수공원역풍경채어바니티) - 아파트 공급계약서 권리의무승계 작성 사업주체 날인 후 부부공동명의 완료 - LH 분양권 전매 동의서 완료 후 개별통보 예정
Step 05	증여신고	부부공동명의 완료 후 90일 이내 증여 신고 / 자진신고 필수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

유의사항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사전 서류 문의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미납이 있을 경우 부부 공동명의가 불가하며, 부부공동명의 진행 이후 증여 취소는 불가하므로 신중히 결정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잔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도 (잔금 일부납부) 지자체에 판단에 따라 취득으로 간주 되어 취득세가 부가 될 수 있으므로 잔금 납입세대는 공동명의신청이 불가합니다.